

## 14-바.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

### 14-바-1.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

#### 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사립대

【공시시기】 : 2023년 10월

【공시내용】 : 2023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보유액(D)은 「대학·설립운영규정」 매년 4. 1. 기준, 「사이버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매년 3. 1. 기준, 그 외는 2022 회계연도 결산)

(단위: 천원)

기준연도	법인명	학교명	구분	운영수익총계 (A)	전입, 기부, 원조보조수입 (B)	기준액 (C)	보유액 (D)	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(% (D/C)×100	학교운영 경비 부담 내역		
									수익금 (E)	부담액 (F)	부담률(% (F/E)×100
			대학								
			전문대학								
			사이버대학								
			중등이하								
			합계								

#### ■ 작성지침

【운영수익총계】 :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상의 수익총계

※ 제외: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

【전입, 기부, 원조보조수입】 :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상의 전입금수입, 국고보조금 수입, 기부금수입과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의 합을 의미

※ 「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의 개정으로 인해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이 전입금수입에서 별도로 분리됨에 따라 기준액 산출시 전입금 수입과 함께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

※ 대학, 전문대학: 학교회계 운영계산서상 전입금수입+국고보조금 수입+기부금 수입+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

【기준액】 : 「대학 설립운영 규정」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, 「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」 제7조

○ 대학: 기준액 = 운영수익총계 -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, 국고보조금으로 하되 300억원 이상

- 전문대학: 기준액 = 운영수익총계 -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, 국고보조금으로 하되 200억원 이상
- 대학원대학: 기준액 = 운영수익총계 -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, 국고보조금으로 하되 100억원 이상
- 사이버대학: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기준액 = (등록금수입+교육부대수입+교육외수입)/2으로 하되, 35억원(전문학사학위: 25억원) 이상
-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: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경우 기준액 = 등록금수입+교육부대수입+교육외수입
- 중등이하교: 기준액 = (운영수익총계 - 전입기부,원조보조수입)/2
- 단,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대학·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.8%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
- 단,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운영수익총액의 55.6%이상을 확보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

**【보유액】** :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의 평가액 합

※ 단, 수익사업체 장기차입금, 기본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, 예금으로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제외

**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(%)】** : (보유액/기준액) × 100

**【수익금】** :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 - 제비용

- 총수입 = 법인일반회계로 관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 + 수익사업회계로 관리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입금액 중 법인일반회계로 진출되는 금액
- 제 비용 = 당해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

**【부담액】** : 당해연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액 중 교비회계로 진출한 금액

**【부담률(%)】** : (부담액/수익금) × 100

※ 「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제8조 및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제8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액의 80%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, 총 소득의 80%로 학교운영경비 수익금을 재산출

## ■ 참고사항

-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
-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